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84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3. 한윤수의원 대표발의(13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1. 28.)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한윤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업소 및 금융기관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어,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원활한 적응을 돕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사무위탁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
- 현장학습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안 제8조 및 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조례안 예고 : 2023. 11. 06. ~ 11. 10.(5일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행정재경위원회 한윤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안은 안 제1조와 같이 강남구 어르신을 위한 기존의 정보화교실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 및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음과 동시에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장년기에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65세 이상 노년 세대의 디지털 문화지체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노년층 세대의 심리적 소외를 불러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소비활동을 위축하게 만들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젊은층이나 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활디지털을 몸에 체득하게 하는 노년층을 위한 특화된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이 초·중·고교 의무교육과 같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정책 의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적용대상)은 안 제2조제1호의 65세 이상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생활디지털 교육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무료로 실시하는 규정임.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은 본 생활디지털 교육이 일반적인 정보화교실의 하부과정으로 인식되지 않고, 특화된 사회정보화 교육으로 추진되도록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을 3년마다 계획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사무의 위탁)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교실과 연계하여 전문교

육기관이 위탁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업무추진 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8조(자문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없이 현행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행하게 하려는 것임.

- 안 제9조(현장학습)은 직무상 금품행위를 조례에 반영할 때, 그 지급 방법,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라는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의 결정사항을 따라 지급 방법인 “사전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학습과정을 계속 이수한 강남구민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어야 선심행정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지급 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안 제4조로 설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은 현장학습 추진에 협력하는 금융기관, 종교단체, 상인단체, 개별 매장 업소 등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협력으로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금융기관이 강사파견 등 무료로 봉사할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생활디지털 효사랑 업소” 인증판을 수여하는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노년층의 생활디지털 부적응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발의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이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현재 해당 부서는 교육용 키오스크를 10여대 갖춘 것으로 보여 이의 추가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며,

- 만약 노년층 교육신청이 증가할 경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등의 소요예산 부분을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중 두뇌를 자극하는 정보화교육과 연계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의결된다면,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가 될 것이며, 집행부서의 노력은 노년층 사회문제 해소의 정책적 선례로 남게 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끝.